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진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54

발의연월일: 2012. 10. 22.

발 의 자:정진후·김제남·박홍근

박원석 • 유성엽 • 심상정

서기호・노회찬・강동원

이목희 · 홍영표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은 국민투표권을 19세 이상의 국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.

그러나 정치·사회의 민주화,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할 수 있음.

또한, 「병역법」 및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등에서 18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병역의 의무 및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, 「민법」에 따른 혼인 및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또한 18세 이상

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미 다른 법률에서 도 18세 이상의 자에 대한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따라서 투표권 부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자에서 18세 이상의 자로 낮추려는 것임(안 제7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정진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225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

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 중 "19세"를 "18세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투표권) <u>19세</u> 이상의 국민	제7조(투표권) <u>18세</u>
은 투표권이 있다.	